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5. 13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2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5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5. 1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국장 이성자)

가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기간 갱신 제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사회복지시설의 명칭·위치 및 그 주요기능 시설 조항 신설(안 제2조의2)
-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갱신 1회 한정(안 제4조제3항)
-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하여야 할 규정 정비(안 제6조제2항)

-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, 주요기능 신설(별표 1)
-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 및 문장 등을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임선영)

- 본 건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기간 갱신 제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으로
 - 안 제2조의2 및 별표1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명칭·위치 및 주요기능을 규정
 -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토록 규정
 - 안 제6조에서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정비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시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 계약기간 갱신 제한을 통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,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9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2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
계약기간 갱신 제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근거를
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복지시설의 명칭·위치 및 그 주요기능 시설 조항 신설(안 제2조의2)
- 나.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갱신 1회 한정(안 제4조제3항)
- 다.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하여야 할 규정 정비(안 제6조제2항)
- 라.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, 주요기능 시설(별표 1)
- 마. 그 밖에 알기쉬운 용어 및 문장 등을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해당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0. 1. 16. ~ 2. 5.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설치·운영하는데”를 “설치·운영하는 데”로 하고, “항상 시키는”을 “항상시키는”으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의 명칭·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34조제4항”을 “제34조제5항”으로 하고, “사회복지 법인”을 “사회복지법인”으로 하며, 제2항 중 “별표와”를 “별표 2와”로 하고, 제3항 중 “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”를 “한 차례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해당 하는”을 “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.”을 “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”으로 하며, 제3항 중 “초과 할 수”를 “초과할 수”로 하고, 제6항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러하지 아니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“심의의결”을 각각 “심의·의결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6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7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8.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7조제1호 중 “**이바지 할**”을 “**이바지할**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**소정의 사용료**”를 “**사용료**”로 한다.

별표를 별표 2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(제2조의 2관련)

연 번	주관 부서	시설명	위 치	주요기능
1	복지 정책과	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	신길로 13길 4	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
2		신길종합사회복지관	영등포로84길 24-5	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
3	사회 복지과	구립장애인사랑나눔의집	신길로 55	장애인복지사업 운영
4		영등포장애인주간보호소	신길로 55	장애인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
5	어르신 복지과	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(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병설데이케어센터)	도림로 482	어르신 여가 복지,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
6		영등포노인케어센터	도림로 482	장기요양등급자 일상생활 지원
7		엘림데이케어센터	도림로 482	장기요양등급자 일상생활 지원
8		영등포노인복지센터	선유서로34길 10	장기요양등급자 일상생활 지원
9		당산데이케어센터	국회대로28길 17	장기요양등급자 일상생활 지원
10		신길5동데이케어센터	도림로80길 6	장기요양등급자 일상생활 지원
11		대림1동데이케어센터	디지털로 441	장기요양등급자 일상생활 지원
12		영등포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	당산로29길 9	장기요양등급자 일상생활 지원
13		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(산하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및 시니어 행복발전센터)	도영로22길 36	어르신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
14		여의도복지관 (영등포50플러스센터)	여의대방로 372	어르신 및 중장년층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<u>설치·운영하는데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필요로 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을 <u>향상</u>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설치·운영하는 데</u> ----- ----- ----- <u>향상시키는</u> -----.
(신 설)	제2조의2(설치 등) <u>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의 명칭·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.</u>
제4조(시설의 위탁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<u>사회복지법인</u>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	제4조(시설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<u>제34조제5항</u> ----- <u>사회복지법인</u> ----- -----.
②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 및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, 수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은
별표와 같다.

③ 위탁계약기간은 「사회복지
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
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. 다만
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때에는 제5조의 수탁자선정심
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
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, 이 경
우 재위탁 받고자 하는 수탁자
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
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5조(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) ①
(생략)

② 선정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
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
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
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
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
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
청장이 지명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 선정
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

별표 2와 같다

③ -----

----- 한 차례에
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
있으며,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해당하는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----- 구

청장이 인정하는 사람.

③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 수는 위촉된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.

④ ~ ⑤ (생략)

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리 하지 아니 한다.

⑦ (생략)

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(생략)

1. ~ 7. (생략)

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,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③ -----

---- 초과할 수 ----.

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그리
하지 아니 한다.

⑦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(현행과 같음)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심의·의
결-----.
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심의의결의</u>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	2. <u>심의·의결</u> ----- --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계약의 체결) ① (생략)	제6조(계약의 체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, 위탁재산, 위탁기간, 위탁사업,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, 시설의 안전관리, 고용승계, 계약의 해지,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을 공증한다.</u>	② <u>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
(신설)	1. <u>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</u>
(신설)	2. <u>위탁계약기간</u>
(신설)	3. <u>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</u>
(신설)	4. <u>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</u>
(신설)	5. <u>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</u>
(신설)	6. <u>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</u>
(신설)	7. <u>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</u>
(신설)	8. <u>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u>
제7조(수탁자의 의무)	제7조(수탁자의 의무)

1.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<u>이바지</u>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. 2. ~ 5. (생 략) 제9조(비용의 징수) 구청장은 위 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 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에서 정하는 <u>소정의 사용료</u>, 수 수료 등의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. [별표]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(제4조제2항 관련) (내용 생략)	1. ----- -----이바지 할 ----- -----. 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9조(비용의 징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용료</u>, ----- ----- -----. [별표 2]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(제4조제2항 관련) (현행과 같음)
--	--